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580 호 2026. 9. 17.(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86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사항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87호[하천 점용허가 고시(26-61)].....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88호[하천 점용허가 고시(26-62)].....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90호[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91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26-17)]..... 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92호[하천점용허가 고시 요청(26-60)]..... 7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93호[하천 점용허가 고시 요청(26-64)]..... 8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94호[하천 점용허가 고시 요청(26-65)]..... 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95호[하천점용허가 고시 요청(26-66)]..... 10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96호[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11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22호[도로점용(굴착)허가 기간연장 공고(허가26-40호)]..... 1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23호[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허가26-57호)]..... 1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24호[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개]..... 1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29호[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미니스톱산하휴게소점)]..... 1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33호[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허가26-58호)]..... 1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34호[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허가26-59호)]..... 1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35호[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실시 계획 및 위탁의료기관 공고]..... 1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37호[하천 및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차조사,2차)]..... 2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50호[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실시 계획 및 위탁의료기관 공고(수정)]..... 27
-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공고 제2026-22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2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6-23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2

안 내	○ 복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복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복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복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186호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완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고시내역

협의 번호	협의자		점용장소	면적 (㎡)	협의기간	점용목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제2026 -6호	울산 광역시청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367-16번지 일원	75,746 (육역:58,346, 해역:17,400)	'26.09.28. ~'26.10.11.	2026년 울산 불꽃 축제 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187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		
점 용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1006번지 외 55필지	하 천 명 칭	○ 동천
점 용 내 용	○ 2026년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점 용 면 적	○ 12,195.2m ²
점 용 기 간	○ 2026. 9. 14.(월) ~ 2031. 9. 12.(금)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188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		
점 용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782-2번지	하 천 명 칭	○ 태화강
점 용 내 용	○ 토지의 점용(생태체험장 부스 운영)	점 용 면 적	○ 9m ²
점 용 기 간	○ 2026. 9. 21.(월) ~ 2026. 11. 22.(일)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190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에 따라 확정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의회 의결일자 : 2026. 9. 15.
-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590,305,244	100.00%	541,963,905	100.00%	48,341,339	8.92%
일반회계	583,127,051	98.78%	535,687,366	98.84%	47,439,685	8.92%
특별회계	7,178,193	1.22%	6,276,539	1.16%	901,654	14.37%
기타특별회계	7,178,193	1.22%	6,276,539	1.16%	901,654	14.3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62,592	0.01%	59,800	0.01%	2,792	4.6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92,399	0.07%	424,699	0.08%	△32,300	△7.61%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112,240	0.19%	1,112,240	0.21%	0	0.00%
주차장특별회계	5,610,962	0.95%	4,679,800	0.86%	931,162	19.90%

□ 일반회계 세입내역

(단위 : 천원)

장·관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583,127,051	100.00%	535,687,366	100.00%	47,439,685	8.86%
100	지방세수입	94,470,000	16.20%	94,470,000	17.64%	0	0.00%
110	지방세	94,470,000	16.20%	94,470,000	17.64%	0	0.00%
200	세외수입	27,157,004	4.66%	25,732,928	4.80%	1,424,076	5.53%
210	경상적세외수입	23,732,819	4.07%	23,139,386	4.32%	593,433	2.56%
220	임시적세외수입	1,380,501	0.24%	862,342	0.16%	518,159	60.09%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43,684	0.18%	1,031,200	0.19%	12,484	1.21%
240	지난연도 수입	1,000,000	0.17%	700,000	0.13%	300,000	42.86%
300	지방교부세	24,919,000	4.27%	17,360,000	3.24%	7,559,000	43.54%
310	지방교부세	24,919,000	4.27%	17,360,000	3.24%	7,559,000	43.54%
400	조정교부금등	68,178,300	11.69%	62,278,300	11.63%	5,900,000	9.47%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68,178,300	11.69%	62,278,300	11.63%	5,900,000	9.47%
500	보조금	347,194,685	59.54%	318,624,667	59.48%	28,570,018	8.97%
510	국고보조금등	236,547,472	40.57%	215,513,325	40.23%	21,034,147	9.76%
520	시·도비보조금등	110,647,213	18.97%	103,111,342	19.25%	7,535,871	7.31%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208,062	3.64%	17,221,471	3.21%	3,986,591	23.15%
710	보전수입등	16,010,568	2.75%	11,893,827	2.22%	4,116,741	34.61%
720	내부거래	5,197,494	0.89%	5,327,644	0.99%	△ 130,150	△ 2.44%

□ 일반회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583,127,051	100.00%	535,687,366	100.00%	47,439,685	8.86%
010	일반공공행정	25,178,486	4.32%	24,553,117	4.58%	625,369	2.55%
020	공공질서및안전	3,544,519	0.61%	3,256,181	0.61%	288,338	8.86%
050	교육	1,799,412	0.31%	1,746,110	0.33%	53,302	3.05%
060	문화및관광	29,770,660	5.11%	27,005,891	5.04%	2,764,769	10.24%
070	환경	16,046,405	2.75%	15,854,340	2.96%	192,065	1.21%
080	사회복지	317,883,069	54.51%	312,282,806	58.30%	5,600,263	1.79%
090	보건	17,169,348	2.94%	16,662,570	3.11%	506,778	3.04%
100	농림해양수산	25,872,995	4.44%	23,194,962	4.33%	2,678,033	11.55%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7,937,852	4.79%	3,140,738	0.59%	24,797,114	789.53%
120	교통및물류	16,351,616	2.80%	9,248,495	1.73%	7,103,121	76.80%
140	국토및지역개발	23,430,611	4.02%	20,750,020	3.87%	2,680,591	12.92%
160	예비비	527,365	0.09%	527,156	0.10%	209	0.04%
900	기타	77,614,713	13.31%	77,464,980	14.46%	149,733	0.19%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19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가. 허가번호: 26-17

나. 허가 연월일: 2026. 9. 17.

2. 점용·사용의 목적: 도시계획시설 도로(중2-675호) 개설에 따른 토지의 점유

3. 점용·사용의 장소: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1036-1번지 외 1필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일시) 2,298㎡

나. 기 간: (일시) 2026. 9. 17. ~ 2027.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울산해양관광단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기찬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1로 1, 수경타워 5층(산하동)

6.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신고대상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192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울산해양관광단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기*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1로 *		
점 용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1036	하 천 명 칭	○ 신명천
점 용 내 용	○ 건설장비 적치장	점 용 면 적	○ 588.0m ²
점 용 기 간	○ 2026. 9. 16.(수) ~ 2027. 5. 31.(월)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193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사)울산민예총 음악위원회 위원장 한유*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거리 31, *층		
점 용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118번지	하 천 명 칭	○ 매곡천
점 용 내 용	○ 공연	점 용 면 적	○ 33.0㎡
점 용 기 간	○ 2026. 9. 19.(토) 20:00 ~ 9. 20.(일) 20:0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194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이선*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길 199 102/50*		
점 용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118번지	하 천 명 칭	○ 매곡천
점 용 내 용	○ 공연	점 용 면 적	○ 33.0m ²
점 용 기 간	○ 2026. 9. 24.(목) 15:00 ~ 18:00 ○ 2026. 9. 25.(금) 15:00 ~ 18:0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195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안요*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서로 19 줍파크(101동 20*호)		
점 용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118번지	하 천 명 칭	○ 매곡천
점 용 내 용	○ 공연	점 용 면 적	○ 33.0㎡
점 용 기 간	○ 2026. 10. 4.(목) 14:00 ~ 17:0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6 - 196호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매곡동 887-5	매곡산업6길 38-1	2026. 9. 16.	2026. 9. 17.	2015. 2. 2	기존 매곡산업단지 도로명과 연계하여 도로명 부여함
매곡동 911-9	당수골10길 4	2026. 9. 16.	2026. 9. 17.	2017. 5. 4.	당수나무가 있는 당수골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함
신천동 311-4	제내3길 7-4	2026. 9. 16.	2026. 9. 17.	2004. 8. 9.	기존 자연마을인 제내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함
무룡동 701-6	달곡1길 35	2026. 9. 16.	2026. 9. 17.	2004. 8. 9.	옛 지명인 달곡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함
송정동 1248-4	곡리8길 45	2026. 9. 16.	2026. 9. 17.	2018. 5. 10.	옛 지명인 골짜기 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함

○ 도로명주소 폐지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 고
제내3길 7-2	2026. 9. 16.	건물멸실	철거 후 신축
제내3길 7-4	2023. 1. 4.	건물멸실	철거 후 신축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584)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222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변경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주)경동도시가스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10			
점용 위치	○ 효문동 753	노선명	○ 중1-44	
점용 목적	○ 도시가스 배관 매설공사	점용 면적	(당초) ○ 8.6 ~ 9.4(30일)	(변경) ○ 8.6 ~ 10.4.(60일)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223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주)경동도시가스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10		
점용 위치	○ 중산동 1323-10	노선명	○ 소2-355
점용 목적	○ 도시가스 매설공사	점용 면적	○ L = 6.0m ○ A(일시) = 10.8㎡ ○ A(계속) = 0.36㎡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224호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12 규정에 따라 공직자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소 속	울산광역시 북구		직 위	북구청장	성 명	이동권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JW신약	200	매각	440	2026.7.23.	KB증권
배우자	대원전선	120	매각	1,638	2026.7.6.	KB증권
배우자	삼성E&A	50	매각	2,447	2026.8.24.	KB증권
배우자	주성엔지니어링	20	매각	4,990	2026.7.3.	KB증권
배우자	현대약품	50	매각	367	2026.7.23.	KB증권
배우자	JW신약	350	매각	771	2026.7.24.	KB증권
배우자	대원전선	30	매각	382	2026.7.24.	KB증권
장녀	삼성전자	3	매각	750	2026.8.14.	미래에셋증권
장녀	삼성전자	2	매각	510	2026.8.14.	미래에셋증권
장녀	삼성전자	3	매각	778	2026.8.24.	미래에셋증권
장녀	삼성전자	2	매각	548	2026.8.25.	미래에셋증권
장녀	코오롱인더	30	매각	1,671	2026.8.14.	미래에셋증권
장녀	코오롱인더	70	매각	3,850	2026.8.24.	미래에셋증권
장녀	코오롱인더	70	매각	3,489	2026.8.25.	미래에셋증권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229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반송 분 공시송달(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자의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2(영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통지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26. 9. 11. ~ 2026. 9. 27. (16일간)
3. 근 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2
4.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6. 9. 28.
5. 업소 내역

업 종 (등록/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예정처분내용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제2023-0346***호)	미니스톱 산하휴게소점	(주)강동에 너지솔루 션,윤**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 로 1845-252, 지상1층(산하동)	사업자등록 폐업	직권말소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예고기간 내 이
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 052-241-7782)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233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주)경동도시가스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10		
점용 위치	○ 송정동 1199-4	노선명	○ 소2-422
점용 목적	○ 도시가스 매설공사	점용 면적	○ L = 7.0m ○ A(일시) = 12.6㎡ ○ A(계속) = 0.42㎡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234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3길 16		
점용 위치	○ 매곡동 863	노선명	○ 대3-38
점용 목적	○ 신규 급수공사	점용 면적	○ L = 7.0m ○ A(일시) = 14.0㎡ ○ A(계속) = 7.0㎡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235호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실시 계획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의거,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실시 계획 및 의료기관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장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대상 및 접종기간

구 분		접종기간	지원대상
어린이	- 2회 접종 대상자	`26.9.21. ~ `27.4.30.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 (2012.1.1.~2026.8.31.출생자)
	- 1회 접종 대상자	`26.9.28. ~ `27.4.30.	
임신부	-	`26.9.21. ~ `27.4.30.	임신부 (임신여부 증빙서류 제시 필수)
어르신	- 75세 이상 어르신	`26.10.12. ~ `27.4.30.	1951.12.31. 이전 출생자
	- 70~74세 어르신	`26.10.15. ~ `27.4.30.	1952.1.1.~1956.12.31. 출생자
	- 65~69세 어르신	`26.10.19. ~ `27.4.30.	1957.1.1.~1961.12.31. 출생자
지자체	- 15~64세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26.10.19. ~ `27.2.28.	1962.1.1.~2011.12.31. 출생자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고3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대입수험생	`26.9.21. ~ `26.12.31.	2008.1.1.~2008.12.31. 출생자,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대입수험생

* 2회 접종 대상자: 2026.6.30.일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경우 및 처음 받는

생후 6개월~8세 소아의 경우(4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

* 1회 접종 대상자: 2026.6.30.일까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횟수가 총 2회 이상(누적) 있는 경우 또는
9세 이상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동별	병·의원명	전화번호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장애인, 수급자, 유공자	고등학교 3학년
염포동 (2개소)	구암의원	287-7246	●	●		●	
	함께하는의원	289-7046	●	●	●		●
양정동 (5개소)	윤가정의학과의원	287-2300	●	●	●		●
	한소아청소년과의원	288-0075	●	●	●	●	
	BB요양병원	716-1020	●			●	
	이기호내과의원	287-6187	●				
	하나정형외과의원	287-9852	●				
화봉동 (6개소)	굿닥터연합의원	261-7553	●				
	굿모닝이비인후과의원	287-4287	●	●	●	●	
	김유홍내과의원	288-9693	●	●	●		
	우리가정의학과의원	289-2075	●	●		●	●
	홍찬의소아청소년과의원	281-0756	●	●	●		●
	화봉코코이비인후과	957-2000	●	●	●		
연암동 (3개소)	울산시티병원	280-9000	●	●	●	●	
	김현경의원	287-0314	●	●			
	현대연합의원	291-9800	●	●			
명춘동 (2개소)	김은정소아과의원	288-5510	●	●	●		
	행복한내과의원	283-2299	●	●			●
호계동 (8개소)	365호계내과의원	295-1190	●			●	
	김환곤내과의원	295-6996	●		●		
	울산엘리아병원	290-2100	●	●		●	●
	이순일내과의원	282-7588	●	●			●
	세나요양병원	290-2000	●				
	예스정형외과의원	286-5800	●				
	의료법인 월촌의료재단 해솔요양병원	260-5577	●				
	한양마취통증의학과의원	293-5588	●				
송정동 (4개소)	탐이비인후과의원	249-7582	●	●	●	●	●
	몸바른의원	222-7575	●	●	●		
	쥬라기소아청소년과의원	251-3336	●	●	●		●
	송정파스트이비인후과의원	297-8200	●	●	●		
신천동 (6개소)	복음요양병원	268-7000	●	●			
	열린이비인후과의원	291-2975	●	●			
	한빛이비인후과의원	286-7613	●	●			●
	울산아동 병원	282-7171	●	●	●	●	●
	의료법인 기쁨의료재단 엠디한방병원	286-3355	●	●	●		
	호계연합내과진단방사선과의원	286-7585	●				
매곡동	다정의원	282-0127	●	●	●		●

동별	병·의원명	전화번호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장애인, 저소득층, 유공자	고등학교 3학년
(8개소)	드림아이의원	295-0129	●	●	●		
	봄소아청소년과의원	286-1311	●	●	●		●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281-1231	●	●	●		
	서울아산이비인후과의원	977-1000	●	●	●		
	아이마음아동병원	716-5170	●	●	●	●	●
	웰당이진우내과의원	292-7179	●	●			
	내맘속건강내과의원	943-2000	●	●	●		
중산동 (2개소)	김영근의원	282-3770	●	●			
	이강우소아청소년과의원	268-6575	●	●	●		●
상안동 (4개소)	북울산병원	293-8888	●	●	●	●	
	코끼리이비인후과	294-8275	●	●	●		
	의료법인 엘림의료재단 농소요양병원	282-7002	●				
	조운성내과의원	293-7171	●				
천곡동 (6개소)	개구쟁이소아청소년과의원	294-7504	●	●	●	●	●
	민사랑내과의원	292-1111	●	●	●		●
	새현대의원	291-3770	●	●	●		
	연희가정의학과의원	295-0800	●	●			
	영남이비인후과의원	286-8277	●	●	●		
	정안요양병원	295-2888	●				
산하동 (3개소)	낭만닥터마취통증의학과의원	978-5678	●				
	핀다의원	258-1004	●	●	●		●
	한결의원	268-8227	●	●	●	●	●
정자동 (1개소)	강동의원	298-7534	●			●	

※ 연령별 접종일정을 지키지 않을 시 무료접종이 안됩니다.

※ 의료기관 방문 전 ☎전화로 백신보유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세요.

※ 문의: 북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52-241-8794, 8246~7)

※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시접종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대상 및 접종기간

접종 대상		접종 기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12세 이상 (접종 당시 생년월일 기준)	2026년 10월 12일 ~ 2027년 6월 30일
	12세 미만 (접종 당시 생년월일 기준)	2026년 10월 21일 ~ 2027년 6월 30일
65세 이상 어르신 (1961.12.31. 이전 출생자)	75세 이상 (1951.12.31. 이전 출생)	2025년 10월 12일 ~ 2027년 6월 30일
	70~74세 (1952.1.1.~1956.12.31.출생)	2025년 10월 15일 ~ 2027년 6월 30일
	65~69세 (1957.1.1.~1961.12.31. 출생)	2025년 10월 19일 ~ 2027년 6월 30일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병·의원명	전화번호	주 소	
1	구암의원	287-7246	염포로 633	염포동
2	함께하는의원	289-7046	염포로 673	
3	윤가정의학과의원	287-2300	염포로 529, 303호	양정동
4	이기호내과의원	287-6187	염포로 601, 2층	
5	한소아청소년과의원	288-0075	염포로 601, (현대자동차회관) 2층	
6	BB요양병원	716-1020	염포로 353	
7	화봉코코이비인후과	957-2000	화봉로75 4층 1호	화봉동
8	김유홍내과의원	288-9693	화봉로 67, 2층	
9	우리가정의학과의원	289-2075	화봉로 75	
10	울산시티병원	280-9068	산업로 1007	연암동
11	현대연합의원	291-9800	상방로 106, 2층	
12	김은정소아과의원	288-5510	명촌15길 10, (평창리비에르3차상가) 201호	명촌동
13	365호계내과의원	295-1190	호계로 272	호계동
14	울산엘리아병원	290-2100	호계로 285	
15	이순일내과의원	282-7588	호계2길 7, 3층	
16	예스정형외과의원	286-5800	호계로 241	
17	세나요양병원	290-2000	호계로 296	
18	열린이비인후과의원	291-2975	호계로 322, 2층	신천동

19	울산아동병원	282-7171	호계로 332-1, 3층	
20	복음요양병원	268-7000	제내1길 6	
21	엠디한방병원	286-3355	호계로 332-1, 현대하이플러스 2,4층	
22	호계연합내과진단방사선의원	286-7585	호계로 326	
23	다정의원	282-0127	매곡1로 15	매곡동
24	드림아이의원	295-0129	호계매곡1로 31, (에일린의뜰1차상가동) 105호	
25	봄소아청소년과의원	286-1311	매곡1로 15, 3층	
26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281-1231	매곡로 115, 202호	
27	서울아산이비인후과의원	977-1000	매산로 15, (참조은빌딩) 3층	
28	웰당이진우내과의원	943-2000	매곡1로 46, (매곡동, 대우프라자) 208호	
29	이강우소아청소년과의원	268-6575	중산동로25, 401호	중산동
30	김영근의원	282-3770	이화5길 10	
31	농소요양병원	282-7002	아진로 78	상안동
32	코끼리이비인후과의원	294-8275	아진로 76, (맑은샘빌딩) 201호	
33	북울산병원	293-8888	신답로 37	
34	개구쟁이소아청소년과의원	294-7504	달천로 9, 202호	천곡동
35	민사랑내과의원	292-1111	아진로 102, (그린상가) 201호	
36	새현대의원	291-3770	천곡길 169, 106동 201호	
37	연희가정의학과의원	295-0800	천곡남로 33, (삼성코아루상가) 203~204호	
38	영남이비인후과의원	286-8277	가재길 87, 3층	
39	정안요양병원	295-2888	관문길 251	
40	낭만닥터마취통증의학과의원	978-5678	산하중앙2로 150, 4층	산하동
41	한결의원	268-8227	산하중앙2로 290, (아이스케어) 305~306호	
42	강동의원	298-7534	동해안로 1441	정자동
43	쥬라기소아청소년과의원	251-3346	박상진12로 11, 지오타워 403~405호	송정동

※ 의료기관 방문 전 ☎전화로 백신보유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세요.

※ 문의: 북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52-241-8794, 8246~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237호

하천 및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차조사)

우리 구 하천 및 소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행위자에게 우편송달(등기) 통지하였으나, 폐문 및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공 고 명: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2.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28. (14일간)
-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울산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 4. 공고내용

행위자	반송주소	위반장소	위반사항	반송사유
김*권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761-*	진장동 719-2,761-1번지 일원	가설건축물 등	폐문부재 등
강*필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726-*	진장동 719-2,724-3번지 일원	가설건축물 등	폐문부재 등
명*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광성로 34-1*	진장동 719-2,724-3번지 일원	가설건축물 등	폐문부재 등
신*옥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5, 10*동 40*호	진장동 719-2,723-1번지 일원	가설건축물 등	폐문부재 등
박*경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93-1*	진장동 719-2, 719-3번지 일원	불법경작 등	폐문부재 등
안*숙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35번길 5*, 140*호	가대동993,산94-6번지 일원	기타(물건적치) 등	폐문부재 등

김*구	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46, 21*동 190*호	어물동 산159-1,1299-2 어물동 1121-4,1122번지 일원	불법경작 등	폐문부재 등
농업회사법 인어*농원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5길 *	어물동 산159-1,1299-2 어물동 1121-4,1122번지 일원	불법경작 등	폐문부재 등
김*일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81, 10*동 306*	산하동 920-28, 921 산하동 492-1번지 일원	불법경작 등	폐문부재 등
이*자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233번길 2*, 비동 80*호	어물동 1240-54, 어물동 1039, 1040-1번지 일원	불법경작 등	폐문부재 등
김*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시례길 19*-1*	정자동 224, 무룡동 935-146번지 일원	불법경작 등	폐문부재 등
박*문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60*-*	정자동 224, 무룡동 935-146번지 일원	불법경작 등	폐문부재 등
김*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239-1, 10*동 50*호	매곡동380번지 일원	기타(물건적치) 등	폐문부재 등
김*진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3*, 11*동	상안동 711-23번지 일원	기타(물건적치) 등	폐문부재 등
최*영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강로 20*-2*	달천동 46-4,894번지 일원	기타(물건적치) 등	폐문부재 등
최*열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234번길 47, 50*동 140*호	달천동 892-20번지 일원	가설건축물 등	폐문부재 등
박*순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0*	창평동 1292-26,1292-32번지 일원	불법경작 등	폐문부재 등

6. 고지사항

- 가. 「하천법」 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위반에 따른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처분(원상회복 명령)을 통지(공고)하오니, **2026년 10월 5일(월)까지** 자진 원상회복하여 그 결과(사진 등)를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과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불임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위 기한 내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고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며,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및 「소하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공시송달이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행위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 효력이 발생합니다.
- 라. 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나. 문의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052-241-7884)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250호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실시 계획 공고(수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의거,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실시 계획 및 의료기관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장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대상 및 접종기간

구 분		접종기간	지원대상
어린이	- 2회 접종 대상자	‘26.9.21. ~ ‘27.4.30.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 (2012.1.1.~2026.8.31.출생자)
	- 1회 접종 대상자	‘26.9.21. ~ ‘27.4.30.	
임신부	-	‘26.9.21. ~ ‘27.4.30.	임신부 (임신여부 증빙서류 제시 필수)
어르신	- 75세 이상 어르신	‘26.10.6. ~ ‘27.4.30.	1951.12.31. 이전 출생자
	- 70~74세 어르신	‘26.10.12. ~ ‘27.4.30.	1952.1.1.~1956.12.31. 출생자
	- 65~69세 어르신	‘26.10.15. ~ ‘27.4.30.	1957.1.1.~1961.12.31. 출생자
지자체	- 15~64세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26.10.15. ~ ‘27.2.28.	1962.1.1.~2011.12.31. 출생자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고3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대입수험생	‘26.9.21. ~ ‘26.12.31.	2008.1.1.~2008.12.31. 출생자,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대입수험생

* 2회 접종 대상자: 2026.6.30.일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경우 및 처음 받는
생후 6개월~8세 소아의 경우(4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

* 1회 접종 대상자: 2026.6.30.일까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횟수가 총 2회 이상(누적) 있는 경우 또는
9세 이상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동별	병·의원명	전화번호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장애인, 수급자, 유공자	고등학교 3학년
염포동 (2개소)	구암의원	287-7246	●	●		●	
	함께하는의원	289-7046	●	●	●		●
양정동 (5개소)	윤가정의학과의원	287-2300	●	●	●		●
	한소아청소년과의원	288-0075	●	●	●	●	
	BB요양병원	716-1020	●			●	
	이기호내과의원	287-6187	●				
	하나정형외과의원	287-9852	●				
화봉동 (6개소)	굿닥터연합의원	261-7553	●				
	굿모닝이비인후과의원	287-4287	●	●	●	●	
	김유홍내과의원	288-9693	●	●	●		
	우리가정의학과의원	289-2075	●	●		●	●
	홍찬의소아청소년과의원	281-0756	●	●	●		●
	화봉코코이비인후과	957-2000	●	●	●		
연암동 (3개소)	울산시티병원	280-9000	●	●	●	●	
	김현경의원	287-0314	●	●			
	현대연합의원	291-9800	●	●			
명촌동 (2개소)	김은정소아과의원	288-5510	●	●	●		
	행복한내과의원	283-2299	●	●			●
호계동 (8개소)	365호계내과의원	295-1190	●			●	
	김환곤내과의원	295-6996	●		●		
	울산엘리아병원	290-2100	●	●		●	●
	이순일내과의원	282-7588	●	●			●
	세나요양병원	290-2000	●				
	예스정형외과의원	286-5800	●				
	의료법인 월촌의료재단 해솔요양병원	260-5577	●				
	한양마취통증의학과의원	293-5588	●				
송정동 (4개소)	탐이비인후과의원	249-7582	●	●	●	●	●
	몸바른의원	222-7575	●	●	●		
	쥬라기소아청소년과의원	251-3336	●	●	●		●
	송정파스트이비인후과의원	297-8200	●	●	●		
신천동 (6개소)	복음요양병원	268-7000	●	●			
	열린이비인후과의원	291-2975	●	●			
	한빛이비인후과의원	286-7613	●	●			●
	울산아동 병원	282-7171	●	●	●	●	●
	의료법인 기쁨의료재단 엠디한방병원	286-3355	●	●	●		
	호계연합내과진단방사선과의원	286-7585	●				
매곡동	다정의원	282-0127	●	●	●		●

동별	병·의원명	전화번호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장애인, 수급자, 유공자	고등학교 3학년
(8개소)	드림아이의원	295-0129	●	●	●		
	봄소아청소년과의원	286-1311	●	●	●		●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281-1231	●	●	●		
	서울아산이비인후과의원	977-1000	●	●	●		
	아이마음아동병원	716-5170	●	●	●	●	●
	웰당이진우내과의원	292-7179	●	●			
	내맘속건강내과의원	943-2000	●	●	●		
중산동 (2개소)	김영근의원	282-3770	●	●			
	이강우소아청소년과의원	268-6575	●	●	●		●
상안동 (4개소)	북울산병원	293-8888	●	●	●	●	
	코끼리이비인후과	294-8275	●	●	●		
	의료법인 엘림의료재단 농소요양병원	282-7002	●				
	조운성내과의원	293-7171	●				
천곡동 (6개소)	개구쟁이소아청소년과의원	294-7504	●	●	●	●	●
	민사랑내과의원	292-1111	●	●	●		●
	새현대의원	291-3770	●	●	●		
	연희가정의학과의원	295-0800	●	●			
	영남이비인후과의원	286-8277	●	●	●		
	정안요양병원	295-2888	●				
산하동 (3개소)	낭만닥터마취통증의학과의원	978-5678	●				
	핀다의원	258-1004	●	●	●		●
	한결의원	268-8227	●	●	●	●	●
정자동 (1개소)	강동의원	298-7534	●			●	

※ 연령별 접종일정을 지키지 않을 시 무료접종이 안됩니다.

※ 의료기관 방문 전 ☎전화로 백신보유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세요.

※ 문의: 북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52-241-8794, 8246~7)

※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시접종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대상 및 접종기간

접종 대상		접종 기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12세 이상 (접종 당시 생년월일 기준)	2026년 10월 12일 ~ 2027년 6월 30일
	12세 미만 (접종 당시 생년월일 기준)	2026년 10월 21일 ~ 2027년 6월 30일
65세 이상 어르신 (1961.12.31. 이전 출생자)	75세 이상 (1951.12.31. 이전 출생)	2025년 10월 12일 ~ 2027년 6월 30일
	70~74세 (1952.1.1.~1956.12.31.출생)	2025년 10월 15일 ~ 2027년 6월 30일
	65~69세 (1957.1.1.~1961.12.31. 출생)	2025년 10월 19일 ~ 2027년 6월 30일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병·의원명	전화번호	주 소	
1	구암의원	287-7246	염포로 633	염포동
2	함께하는의원	289-7046	염포로 673	
3	윤가정의학과의원	287-2300	염포로 529, 303호	양정동
4	이기호내과의원	287-6187	염포로 601, 2층	
5	한소아청소년과의원	288-0075	염포로 601, (현대자동차회관) 2층	
6	BB요양병원	716-1020	염포로 353	
7	화봉코코이비인후과	957-2000	화봉로75 4층 1호	화봉동
8	김유홍내과의원	288-9693	화봉로 67, 2층	
9	우리가정의학과의원	289-2075	화봉로 75	
10	울산시티병원	280-9068	산업로 1007	연암동
11	현대연합의원	291-9800	상방로 106, 2층	
12	김은정소아과의원	288-5510	명촌15길 10, (평창리비에르3차상가) 201호	명촌동
13	365호계내과의원	295-1190	호계로 272	호계동
14	울산엘리아병원	290-2100	호계로 285	
15	이순일내과의원	282-7588	호계2길 7, 3층	
16	예스정형외과의원	286-5800	호계로 241	
17	세나요양병원	290-2000	호계로 296	
18	열린이비인후과의원	291-2975	호계로 322, 2층	신천동

19	울산아동병원	282-7171	호계로 332-1, 3층	
20	복음요양병원	268-7000	제내1길 6	
21	엠디한방병원	286-3355	호계로 332-1, 현대하이플러스 2,4층	
22	호계연합내과진단방사선의원	286-7585	호계로 326	
23	다정의원	282-0127	매곡1로 15	매곡동
24	드림아이의원	295-0129	호계매곡1로 31, (에일린의뜰1차상가동) 105호	
25	봄소아청소년과의원	286-1311	매곡1로 15, 3층	
26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281-1231	매곡로 115, 202호	
27	서울아산이비인후과의원	977-1000	매산로 15, (참조은빌딩) 3층	
28	웰당이진우내과의원	943-2000	매곡1로 46, (매곡동, 대우프라자) 208호	
29	이강우소아청소년과의원	268-6575	중산동로25, 401호	중산동
30	김영근의원	282-3770	이화5길 10	
31	농소요양병원	282-7002	아진로 78	상안동
32	코끼리이비인후과의원	294-8275	아진로 76, (맑은샘빌딩) 201호	
33	북울산병원	293-8888	신답로 37	
34	개구쟁이소아청소년과의원	294-7504	달천로 9, 202호	천곡동
35	민사랑내과의원	292-1111	아진로 102, (그린상가) 201호	
36	새현대의원	291-3770	천곡길 169, 106동 201호	
37	연희가정의학과의원	295-0800	천곡남로 33, (삼성코아루상가) 203~204호	
38	영남이비인후과의원	286-8277	가재길 87, 3층	
39	정안요양병원	295-2888	관문길 251	
40	낭만닥터마취통증의학과의원	978-5678	산하중앙2로 150, 4층	산하동
41	한결의원	268-8227	산하중앙2로 290, (아이스케어) 305~306호	
42	강동의원	298-7534	동해안로 1441	정자동
43	쥬라기소아청소년과의원	251-3346	박상진12로 11, 지오타워 403~405호	송정동

※ 의료기관 방문 전 ☎전화로 백신보유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세요.

※ 문의: 북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52-241-8794, 8246~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6 - 2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철우 의원 대표 발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2025.12.)」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하며,
- 출장 제한 및 수행 직원 보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내실 있고 책임성 있는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심사위원 구성 시,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4조제2항)
- 나.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은 예외적 사유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일반 목적 출장의 경우 의장의 허가 검토서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도입(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 다. 징계·환수 처분 의원에 대하여 2년 이내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 제한 의무화(안 제11조제4항)
- 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감사·조사 의뢰 의무화(안 제12조제6항)
- 마. 출장 동행 공무원에 대한 의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및 거부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조항 신설(안 제16조)
- 바. [별표] 심사기준에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 및 징계·환수 전력자에 대한 심사 항목 신설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 출 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52)241-8982 / 팩스번호 : 052)241-8979
- 이 메 일 : shmo1213@korea.kr

4. 그 밖의 사항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 및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주민”을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후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 검토서를 북구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위원회 개최 전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가 그 의견을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해야 한다.

제1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 공무국외출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직원 보호 등)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 달성이 어려운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없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가?		
	4.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출장의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가? <신설>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	1.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다른 출장자가 과거에 동일 기관을 방문한 적이 없거나 향후 방문할 계획은 없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 할 수 없는 자료인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 되지 않았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4. 출장자 중 징계·환수 처분으로 출장제한 사유가 없는가? <신설>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없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가?		
	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가?		

※ ‘아니오’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후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 검토서를 북구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위원회 개최 전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가 그 의견을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해야 한다.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 공무국외출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16조(직원 보호 등)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
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
는 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
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
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
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표시)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표시)		의견	비고
	☐ 찬성	☐ 반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6 - 2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이선경 의원 대표 발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36156호, 2026. 3. 3.시행)」 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모범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모범공무원 수당 인상(안 제4조제1항)
 - (현행) 5만원 → (개정) 7만원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 출 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52)241-8982 / 팩스번호 : 052)241-8979
- 이 메 일 : shmo121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 및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5만원”을 “7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u>5만원</u> 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4조(수당 지급) ① ----- ----- <u>7만원</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표시)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표시)		의견	비고
	☐ 찬성	☐ 반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